



산업정책 [www.kcca.or.kr](http://www.kcca.or.kr)

- 2009년 中企 기술혁신자금, 1216억원 지원확정
  -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채무불이행자 전략 예방책 마련
  - 산업용지 가격안정을 위해 강화된 처분제한제도(5년) 시행
  - 산업단지 관리, 수요자 중심 모드로
- 

중기청, 실용과제 지원대상 420개 608억원  
선정·발표

## 2009년 中企 기술혁신자금, 1216억원 지원확정

▣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전용 R&D 자금이라 할 수 있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실용과제의 신규 지원 대상(420개 업체, 총 608억원 규모)이 최종 확정되어,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기술개발 자금에 목말라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9일, 중소기업청(청장 흥석우)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실용과제의 선정·평가 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가까이 앞당겨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지원대상으로 420개 과제를 확정하고,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총 608억원 규모의 R&D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기술혁신개발사업 「실용과제」는, 일반 중소기업의 R&D 입문 유도 및 기술혁신 저변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응모 방식으로 올해 1월 30일(금)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았고,

▣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3단계 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역량과 사업화 성공 가능성에 우수한 과제를 엄선하였다.

\* 접수현황 : 총 3,286개 과제 신청

\* 서면평가(2~3월)→현장·경영평가(4~5월)→기술성·사업성평가(5~6월)

- 아울러, 금번 실용과제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중소기업은 총 개발자금의 75% 범위에서, 최대 1년 간 2.5억원 이내의 R&D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 이로써, 지난 4월의 「기술혁신개발사업」 '선도 과제' 신규 지원대상(320개 업체, 총 1,222억원 규모)\* 선정에 이어, 금번 「실용과제」 신규 지원대상 선정을 상반기에 완료함에 따라, 금년도 「기술혁신 개발사업」 신규과제 배정예산 1,453억원 중 83% 이상인 1,216억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도과제 '09년 지원분 : 608억원

▣ 한편, 금년 3월에 「중소기업 R&D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420개 실용과제를 포함하여, 금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 신규 지원과제는 별도의 기관방문 없이 온라인 「전자협약」을 통해 협약체결 절차가 진행되며,

- 협약체결이 완료되는 업체는 곧바로 총 개발자금에 상응하는 'R&D 포인트'를 지급받아 기술개발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지원절차 전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해, 최종 선정 후 사업비 지급까지 소요되던 기간이 종전 '30일' → '15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 R&D 사업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R&D 지원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 체계적 접근을 통해 평가조직 및 인력, 소요예산까지 동시에 분석하고, 현행 평가체계 및 지표 등을 Zero-base에서 재검토 할 방침이며, 본격적 추진을 위해 본청 및 지방청 공무원, 전문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R&D 평가체계 개편 T/F팀」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 금번 T/F팀에는 중소기업 R&D에 대한 학식과 명망을 겸비한 인사로 「기술혁신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R&D 정책의 정체성 및 평가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뚜렷이 하고,

- 중기청 R&D에 참여한 중소기업(탈락업체 포함) 및 평가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기 R&D 패널'을 통해, T/F팀에서 도출되는 세부 '개편안' 검증 및 상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을 통해 정부 R&D 사업 중, '가장 선진화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투자기관·정부 3자 매칭 방식  
으로 100억원 지원

##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 2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기술개발(R&D)은 하였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그간 정부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 투자기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 사업화 성과에 따른 투자회수를 위해, 기존 '출연정률 기술료 회수'를 '매출액 대비 투자수익 회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벤처캐피탈」 공동 투자방식을 채택하여, 국내 벤처투자자금을 사업화 초기 제품개발 영역으로 유도하게 된다.

□ 선정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R&D) 결과물(시제품)을 양산용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제품화·사업화' 과정의 자금을 확보하며, 개발기간 2년 이내에서, 제품화개발 프로젝트에 15억원 내외(정부 50%, 투자기관 30%, 중소기업 20%)로 투자된다.

\* **프로젝트 투자**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

□ 중소기업의 제품화과정에서 필요한 목형·금형 제작, 생산공정설계, 성능·실험 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및 기술인력 확보 등에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화 프로젝트 투자'라는 사업의 도입 취지에 맞게 '매출정률 기술료제도'를 도입하여, 투자기업의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투자수익으로 회수한다. 과중한 기술료 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이에 '상한선(기술료율, 회수기간, 기술료)'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과 투자기관이 허용된 상한선에서 자유롭게 설정을 하게끔 해서 상호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한선** : 기술료율은 매출액 판단기준에 따라 10% ~ 20%, 회수기간은 5년 ~ 7년, 기술료는 정부출연금과 투자기관 투자금 합계 250%이하

□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사각지대였던 제품화·사업화과정에 정부지원정책이 새롭게 시행됨으로서, 개발된 우수 기술이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채무 불이행자 전략 예방책 마련

◆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즉시 전액 회수하던 자금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액회수 유예

## - 5만명 이상의 소상공인 혜택, 지자체와 민간금융기관도 동참

□ 중소기업청(청장 흥석우)은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즉시에 일시상환하였던 것을 유예하는 조치를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많은 소상공인이 일시 상환에 따른 압박에서 벗어나 사업재개와 재창업을 용이하게 되었다.

○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휴·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고리사채자금을 이용하거나 대출 잔액을 일시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었다

○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한 데다가 휴업하더라도 몇 달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창업을 반복하는 소상공업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예) 삼계탕 전문식당을 하다가 조류독감 성행시 휴업했다가 몇 달후 조류독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해야 하는데, 정책자금 지원받은 이유로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 사업재개 기회가 박탈

□ 더불어,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타 지자체로 이전해도 상환 완료시까지 회수를 유예하여 이번 조치에 지자체도 동참하였다.

○ 종전에는 A도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B도로 이전하면 A도에 전액 상환하여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지역이전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조치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43만개)의 약 12%에 달하는 5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 정책자금외에도 시중은행은 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도 자발적으로 자체자금으로대출한 소상공인에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수혜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산업용지 가격안정을 위해 강화된 처분제한제도(5년) 시행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7일 공포·시행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08.5월, 제3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년 2월 개정·공포된 산집법(법률 제9426호, '09.8.7.시행)에서 위임한 사항

#### '09.2월 개정·공포된 「산집법」 처분제한 강화 내용

##### 종 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 개 정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분할매각을 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또한, '09.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관리로 전환 방안' 중 산업단지내 지식서비스산업 입주자격 확대 등 일부 개선과제를 반영하였다.

□ 이번에 강화된 산업용지 처분제한은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설립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 산업용지 처분사례 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 유사제도 : 주택전매제한제도의 전매제한기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허가구역지정기간 5년이내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금년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신의 공장을 주차장과 같은 지원시설로 혹은 그 반대로 변경하고자 할 때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 산업입지 공급시 기업체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며,

○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단지 관리, 수요자 중심 모드로

◆ '09.4.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어 산업단지를 수요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유치공간으로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제도화하고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11일(화) 입법 예고함

□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 〈주요 법 개정 추진 사항〉

□ 첫째,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경미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됨

\* 용도별 토지 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용도 변경,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2단계 절차가 필요함

- 따라서, 입주기업이 공장을 신설, 증설하고자하거나 공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에 2개월, 관리계획 변경에 1개월 등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개정 산집법이 시행되면 준공된 산업단지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가

능하게 되며, 토지 용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임

▣ 둘째,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국토해양부 작성)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공급계획과 연결시키는 장치가 미흡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간 산업용지 수급 불균형 현상을 차단하기가 어려웠음

#### 산업용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07.12, KIET)

- 지역간 불균형 현황 : 수도권 882만m<sup>2</sup>(267만평) · 충청권 77만m<sup>2</sup>(24만평) 공급부족, 호남권 45백만m<sup>2</sup>(1,365만평) 공급과잉 예상
- 미개발·미분양단지(40개 : 143백만m<sup>2</sup>)로 인한 경제적 손실('00 ~ '06년, 평균분양률 97%기준)
  - : 연평균 생산 12.2조원, 부가가치 3.5조원, 고용 3.2만여명

○ 개정 산집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 조사 결과를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셋째,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정하고,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 목적법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 구조고도화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 대상 사업지구, 사업기간, 입주업종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구조고도화 사업은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토지·물건 등에 대한 협의매수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기타 개정 추진 사항〉

- ▣ 그 외에 산집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기존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변경하고 제조업 이외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수의 업종과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복합건축물로 재정의함
  - ② 현행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을 공장설립업무 처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공장설립 희망자가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경감시키고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근거를 마련함
  - ③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운영중인 공장설립지원 센터가 입주기업을 위해 건축, 환경 등에 관한 인·허가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입주기업이 단일 창구(Single Gateway)를 통해 기업경영상에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 「산집법」 개정안은 입법예고(8.11일 ~ 31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09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임

첨고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고도성장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집중 개발됨으로써 국민경제의 핵심거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경제발전을 견인하여 왔음.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기반시설이 노후화 되는 등 기업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가 16%에 달할 뿐 아니라,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공급된 산업단지는 점단화, 지식기반경제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임지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후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임주업종과 토지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 개발과 관리에 관한 행정절차를 중복 변경해야 하는 등 복잡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산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유망산업·지식기반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며, 이에 대한 지

원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준공 후 업종 및 토지용도 변경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 산업 등의 다수의 업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복합 건축물로 재정의(안 제2조제13호)

나. 기업의 산업입지 및 준공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수요 조사근거를 마련하고, 입지조사 결과를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조)

다. 정보망을 이용한 공장설립 승인·등록 등의 업무처리근거 및 관련 외부기관과의 정보망 연계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라. 공장설립지원센터의 대행 업무를 관계행정기관이 지원센터로부터 이송받아 처리하기 위한 근거 추가(안 제7조의2)

마.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법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정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7조의5)

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우선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안 제22조, 제22조의2)

사. 현행 “산업단지혁신사업”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변경하고,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에 “산업집적지간 연계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기

## 위한 근거 신설(안 제2조제12호, 제22조의3제2항)

아. 준공된 산업단지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안 제33조제4항)

자. 구조고도화 계획의 수립·수립 절차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구조고도화 계획의 수립·승인 절차 등을 신설(안 제45조의2)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시행자 범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 지원근거 신설(안 제45조의3, 제45조의4)

(3)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내 토지는 원칙적으로 협의 매수해야 하나, 일정 범위 미만에 대해서는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5조의5)

(4)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안 제45조의6)

(5)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인·허가 간주처리, 비용부담 및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 등을 마련(안 제45조의7, 제45조의8, 제45조의9)

##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4741, 팩스: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 참고2

##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요 보고 내용

###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관리로 전환

-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 -

#### I. 추진 배경

□ 제조업·개발·규제 중심의 현 산업단지 관리 체제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적기 대응이 곤란

□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관리체제로 전환을 통하여 21세기에도 산업단지가 국민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할 필요

#### II.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노후화

\* 국가산업단지의 비중: 제조업 생산 37.1%, 수출 53.2%, 고용 24.7%

\* 산업단지 입주기업 분포: 제조업 86.3%, S/W 개발 등 비제조업 13.7%

\* 노후 산업단지(조성후 20년 이상: 57개) 비중: 입주기업수 80%, 총생산액 79%

□ 수요변화에 신축적 대응이 어려운 개발·관리 절차

○(입지공급) 제조업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는 지식집약적 신산업,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업부문의 빠른 입지수요의 대응에 한계

\* 개발(입주업종·토지용도 결정: 국토부) → 관리(기업유치, 관리·지원: 지경부)

○(행정절차)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실시계획(국토부)과 관리계획(지경부)을 변경해야 하는 복잡한 중복적 행정절차

\* 용도변경 신청 → 관리계획 변경(협의) → 실시계획 변경 → 관리계획 변경

○(환경규제) 환경법령의 엄격한 적용으로 자원 재활용 위축 및 낭비 초래

□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재개발 절차

○(행정절차) 구조고도화계획(산업법, 지경부)과 재정비계획(산업법, 국토부)을 각 별도로 수립 필요

\* 구조고도화사업계획(기본계획→개발계획→시행계획) 수립 이후, 재정비사업계획(재정비요청→재정비계획→시행계획) 수립(총 15개월, 약 1억원 소요)

○(사업기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재원조달, 인센티브, 개발이익 환수절차 등 제도적 사항이 미비

□ 산업단지 관리·지원 기능 분산으로 기업애로의 체계적인 해결 곤란

○(지원체계) 산업단지 입주업종·경영지원은 산업단지공단, 기반시설 유지·정비는 시군구·한전·경찰청 등으로 다원화

☞ 관리·지원 기능의 분산으로 대불국가산단(전남 영암) 기반시설(전봇대, 교량, 도로, 신호등) 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지 못한 결과 초래

### III.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서비스: 공급·개발 ⇒ 수요·관리

○ 유치: 전통산업 ⇒ 제조업+신산업(지식·서비스)

○ 관리체계: 이원화 ⇒ 일원화

○ 기능: 규제중심 ⇒ 지원중심

#### I 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공급·관리

○ 산업입지 수요의 합리적 반영을 위한 통합적 수급조정 체제 구축

- 現) 산업입지공급계획(공급 중심·10년) → 改) 산업입지수급계획(수요 반영·2년)

○ 도심형 산업단지에 대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대폭 허용

- 지식산업집적지구를 지정, 육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전면 허용

\* 우선, 시너지 효과가 큰 경영컨설팅·출판업 등 업종(6개)은 즉시 허용

○ 기업 수요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 경미한 사항(토지면적 10% 미만 등)에 대해서는 1단계(1개월) 절차로 간소화

○ 환경업종 입주를 사전규제 → 사후규제로 전환

-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및 폐기물 무배출 생태산단 지정 확대(5→7)

- 재활용 범위 제한 완화,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열·증기 판매업 허용 등

- ② 기업 중심의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재원조성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관리기관의 출자, 채권발행 등으로 ‘구조고도화 사업펀드’ 조성
      - \* 사업계획 관련 조사·설계비, 도로 등 필요시 정부(예산) 지원
      -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개발이익의 환수로 산단 전체의 이익, 재개발 사업 등에 활용
      -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실시(3개) 및 단지내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
        - 구조고도화계획과 재정비사업계획의 이중 절차를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추진절차로 단축
        - \* 現) 5단계·15개월 → 改) 1단계·6개월

- ③ 산업단지 관리·지원 방식의 선진화**
- 기반시설 정비의 효율적 지원 위해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기반시설 수요 조사·지원계획 수립(산단공, 자체 등)과 과제해결을 위한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지경부) 등 대책 마련
      - \* 현행 관리기관의 업무를 기준 부처별 기능위주의 관리체계에서 Matrix형 통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검토
        -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광역경제권으로 확대·개편
          - \* 개별 산업단지 클러스터(12개) → 6대 광역권 클러스터(40개)

- 관리기관의 기업의 설비투자 및 증설 관련 인·허가 대행

#### IV. 기대 효과

- ▣ 노후화된 제조업 산단에서 지식기반 서비스 산단으로 패러다임 전환
  -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노후 산단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 추진
    - \* 노후 산단(57개)는 전체 산단의 16%로, 입주기업수 80%, 총생산액 79%
    - 규제·관리의 용도변경 제한에서 사업 활성화 지원방식으로 변화
      - 지식서비스 산업의 예외적 허용에서 적극적 유치로 성장 발판 구축
        - ▣ 분야별 개선 효과
          -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로 행정 기간 70% 단축, 비용 50% 절감
          - 노후 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1.5조원 투자(펀드 1조, 민간투자 5천억원))으로 4조원 생산, 2조4천억원 부가가치, 3만3천명 고용효과 창출(KIET, '09.1)
          - 생태산업단지 확대(2개)로 폐기물 1,500만톤, CO2 62만톤 저감 효과
            - \* 산업단지 에너지 이용효율화 : CO2 470만톤 저감 효과